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제1호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와 제3호 “제작연월일”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시행규칙 시행 후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법 제6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1.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번호(법 제5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 (삭제)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호(법 제50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작연월일	3. (삭제)
4.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4. (현행과 같음)